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법률 이슈 검토 (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중국 정부의 조치와 세무 혜택 및 주요 지역의 지원 정책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들은 여러가지 대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i)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2020년 2월 3일자 뉴스레터¹), (ii)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관련 이슈의 검토(2020년 2월 7일자 뉴 스레터²), (iii)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2020년 2 월 11일자 뉴스레터³)에 이어, 네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 해 중국 전염병방지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최근 발표된 세무 혜택 및 주요 지역의 지방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리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2월 20일까지 발표된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향후 중국 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이를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

중국의 전염병 전파 방지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中华人民 共和国传染病防治法)>(이하 '전염병방지법')에 의하면, 전염병은 유행 상 황과 위해의 정도 등에 따라 갑류(甲类)⁴, 을류(乙类)⁵, 병류(丙类)⁶ 로 분 류되며, 각 분류 별로 정부부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2020년 1월

1 <http://www.bkl.co.kr/upload/data/20200203/bkl-legalupdate-20200203.html>

2 <http://www.bkl.co.kr/upload/data/20200207/bkl-legalupdate-20200207.html>

3 <http://www.bkl.co.kr/upload/data/20200211/bkl-legalupdate-20200211.html#>

4 콜레라, 흑사병

5 SARS,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척수회백질염, 조류독감, 폐결핵 등 전염병

6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한센병, 흑열병 등 전염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 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 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 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욱 변호사

T 86.21.6085.2900

E sungwook.kim@bkl.co.kr

조 우 송 외국변호사(중국)

T 86.10.5879.3080

E yusong.zhao@bkl.co.kr

오 려 민 외국변호사(중국)

T 86.21.6085.2900

E lmwu@bkl.co.kr

20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20년 제1호 공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을류 전염병에 속하지만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갑류 전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정부기관은 전염병방지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지역 봉쇄:
 -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에 따라 현급(县级)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발견한 장소 또는 장소내 특정 구역의 인원에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급(省级)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본 행정구역 내 갑류 전염병 구역을 봉쇄
 - 국무원 결정에 의해 대, 중 도시 전염병 구역 또는 여러 성(省)에 걸치는 전염병 구역 및 국경을 봉쇄
- 시장, 영화관, 극장 등 인원의 밀집 활동을 제한 또는 정지
- 영업, 생산 중단, 휴교
-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봉쇄
-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물자 및 교통수단에 대해 위생 검역 실시
- 현급 이상 정부는 관할 지역 내의 비축 물자, 부동산,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수용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무 관련 정책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하여 중국 중앙 세무총국, 재정부 등 기관은 세무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 규칙/통지문의 명칭	실행 정책	정책 내용
납세, 비용 납부 관련 서비스를 최적화 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사태 통제 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에 관한 통지 ⁷ (2020.1.30)	‘비접촉식(非接触式)’ 업무 처리를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국 웹사이트, 휴대폰 APP, 세무처리 단말기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온라인 신고율 95% 달성 - 세금계산서(发票) 등은 온라인, 우편, 세무처리 단말기 등을 통해 신청 및 수령하도록 촉진 - 세무 관련 질의 사항은 핫라인, 위챗(Wechat)⁸, 화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통제 지원을 위한 기부 세수 정책에 관한 공고⁹(2020. 2. 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통제 지원을 위한 세무징수 관리에 관한 공고¹⁰ (2020.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개인이 기부한 물품, 현금은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 기부를 위해 구매한 물품의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비 부가세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대상: (i)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기관; (ii) 공익성 사회조직(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税前扣除) 자격을 취득한 사회 조직); (iii) 방역 임무 수행 중인 병원 -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의 경우 전액 공제 가능 -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빙 자료는 조사에 대비하여 보존(自行判别、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

7 国家税务总局关于优化纳税缴费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8 카카오톡과 유사한 중국의 SNS 메신저

9 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

10 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통지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¹¹ (2020.2.6)	- 회사가 직원에게 폐렴 관련 약품, 의료 용품과 보호 용품 등 실물(현금은 불포함)을 제공한 부분은 급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개인소득세를 면제함
2020년2월의 납세신고기간을 추가 연장할 것에 관한 통지 ¹² (2020.2.17)	- 호복성을 제외하고, 월별 신고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 신고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2월 28일까지 납세 신고 또는 신고 연기를 신청할 수 없는 납세자는 제때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 후, 별도의 처벌 없이 신고 연기 절차를 보충하는 동시에 납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3. 각 지역의 지원 정책

최근 각 지방정부도 기업들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해당 우대 정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¹³.

지역	지원 정책	정책 내용
북경시 ¹⁴ (중소기업 ¹⁵ 에 한정)(2020.2.5)	일부 행정성 비용 수급 중단	- 전염병 기간동안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의 특종설비검사비, 폐수처리비, 도로점유비를 면제
	임차료 면제	- 시, 구의 국유회사 부동산을 임차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월달 임차료 50%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비교적 크고 생산, 경영 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수 인원만 감원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북경시 일인당 평균 실업보험료(失業保險費) 및 기업의 보험 가입 직원수를 기준으로 6개월의 실업보험료 환급 - 북경시 수도 기능과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1) 2020년 4월까지 직원 수가 직전연도와 일치 또는 20% 미만 증가한 경우 3개월 사회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 (2) 2020년 4월까지 직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경우 3개월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 - 위 기업들이 요건에 부합하는 직업기능 교육을 진행한 경우 1인당 1,000위안 기준으로 교육 보조금 지급

11 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12 关于进一步延长2020年2月份纳税申报期限有关事项的通知

13 관련된 지원정책은 성급, 시급 및 현(구, 구급(区级)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정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4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影响促进中小微企业持续健康发展的若干措施

15 <중소기업분류표준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은 중소형 기업을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1) 농업기업: 연간 매출액 2억 위안 이하, (2) 공업기업: 직원 1,000명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 4억 위안 이하, (3) 건축업기업: 연간 매출액 8억 위안 이하 또는 자산총액 8억 위안 이하, (4) 도매업: 직원 200명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 4억 위안 이하, (5) 소매업: 직원 300명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 2억 위안 이하, (6) 교통운송업: 직원 1,000명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 3억 위안 이하, (7) 요식업: 직원 300명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 1억 위안 이하 등.

상해시 ¹⁶ (2020.2.7)	임대료 감면	- 상해 국유기업의 경영성 부동산(개발구와 산업원구, 창업단지 및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를 포함)을 임차하여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2월과 3월의 임차료를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관련	- 2020년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 및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실제 지급한 직전연도 전체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 영업중단 기간에 각종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우 실제 교육비용의 95%를 지원 - 보험가입 인원의 의료보험대우를 낮추지 않고 의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에서, 2020년도 직원의료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납부 요율을 잠정적으로 0.5% 인하
심천시 ¹⁷ (2020.2.7)	임차료 감면	- 시, 구급(区级) 정부 또는 시, 구 정부 산하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차한 비국유기업은 2개월 임차료를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주택공적금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주택공적금을 적립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의 경우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택공적금 비율을 3%로 인하 또는 주택공적금 지급 기간을 12개월 연장
	폐수처리비용 환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게 6개월의 도시폐수처리비용을 반환
	전기사용원가 감소	- 2월달에 납부해야 하는 2부제 전기요금 ¹⁸ 중의 기본 전기요금을 면제
	직원 채용 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기간 내에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감원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 생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감원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사회보험료의 25% 환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격리조치 기간 내에 기업이 지급한 급여는 기본양로보험 기수(基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광둥성 ¹⁹ (2020.2.6)	임차료 감면	- 국유부동산일 경우,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민영임차기업의 첫 달 임차료를 면제하고, 두번째, 세번째 달 임차료의 절반을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기간 내에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감원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격리조치 기간 내에 기업이 지급한 급여는 기본양로보험 기수(基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산둥성(중소기업에 한정) ²⁰ (2020.2.4)	세금 감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의 경우 도시토지사용세, 부동산세 감소 또는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임차료 감면	- 국유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은 1~3개월 임차료 면제
	직원 채용 관련	-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실업보험료의 50% 환급

16 上海市人民政府关于印发上海市全力防控疫情支持服务企业平稳健康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17 深圳市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企业共渡难关的若干措施

18 변압기 용량과 대응되는 기본 전기요금과 전기 사용량과 대응되는 전력량 전기요금을 결합한 전기요금 수취 방식.

19 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企业复工复产的若干政策措施

20 山东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平稳健康发展的若干意见

또한 2020년 2월 18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사회보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호북성 외의 지역:
 - 중소기업: 2월부터 6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 납부를 면제
 - 대형기업: 2월부터 4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의 50% 감면
- 호북성 내 기업:
 - 2월부터 6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 납부를 면제

4. 결론 및 시사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 전역에서 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국에 소재한 많은 한국 기업들도 CSR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역, 통제 등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잘 살펴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와 정책들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Seoul Office: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T 02.3404.0000 F 02.3404.0001 E bkl@bkl.co.kr

Beijing Office:

Unit 2601, Ea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T 86.10.5879.3080 F 86.10.5879.3038 E beijing@bkl.co.kr

Hong Kong Office:

Room 205, 2F,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Hong Kong

T 852.2567.0800 F 852.2567.9500 E bklhongkong@bkl.co.kr

Shanghai Office:

Unit 2503, Tower B, Dawning Center No.500,
Hongbaoshi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1103, PRC

T 86.21.6085.2900 F 86.21.6085.2929 E shanghai@bkl.co.kr

Hanoi Office:

West Tower 2601,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 84.24.3232.1233 F 84.24.3232.1235 E vietnam@bkl.co.kr

Ho Chi Minh City Office:

Unit 3, 37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28.38.212.303 F 84.28.38.21.24.27 E vietnam@bkl.co.kr

Yangon Office:

No. 82, Sin Phuy Shin Avenue, Pyay Road, 6 1/2 miles, Ward 11,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E myanmar@bkl.co.kr

Dubai Office:

Business Center #32, The Gate, Level 15, DIFC, P.O. Box 121208, Dubai, UAE

T 971.4.401.9921 F 971.4.401.9578 E dubai@bkl.co.kr